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제안이유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2.12.31.자로 만료 예정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그간 구축한 마을공동체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보고함.

2. 추진근거

-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3. 주요 내용

가. 시설개요

시설명	위치	소유주	규모	공간구성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금천구 은행나무로 45	서울시 (토지 및 건물)	토지 323.2㎡ 건물 285.3㎡	마을공동체기록관, 경청마루, 사무실, 공유마루 등

나. 현 운영현황

- 1)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2) 수탁기관 : 사단법인 마을인교육(대표 이정석 / 센터장 김유선)
- 3) 운영인력 : 5명(센터장, 팀장1, 팀원3)

다. 재계약 내용

-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
- 2) 수탁기관 : 사단법인 마을인교육(대표 이정석 / 센터장 김유선)
- 3) 운영인력 : 4명(센터장, 팀장1, 팀원2)
- 4) 위탁업무 : 마을센터 운영 및 공모사업, 마을교육, 네트워크, 아카이브
- 5) 주요 변경내용

구분	기존	변경
위탁기간	- 3년(2020.1.1.~2022.12.31.)	- 1년(2023.1.1.~12.31.)
인력	- 5명(센터장, 팀장1, 팀원3)	- 4명(센터장, 팀장1, 팀원2)
조직	- 중간지원조직별 개별 지원	- 통합체계구축으로 통합 지원
사업 및 예산	- 시 예산 지원방향 및 규모에 따라 구 여건에 맞게 조정·운용	- 시비 지원 중단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사업 재정비
공간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총괄 관리	- 주민참여 공론장으로 적극 활용

라. 재계약 추진 필요성

- 1) 마을·자치·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과 준비기간(용역, 조직개편, 조례제정 등) 소요에 따른 위탁운영 연장
- 2)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 운영
- 3) 기존에 구축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
- 4) 현 수탁기관의 외부기관 성과평가 용역 결과 우수(88.42점)

4. 추진일정

- 가. 2022. 9. 21. : 법인이사회 재계약 안건 심의
- 나. 2022. 10. 4. : 금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 및 자문
- 다. 2022. 11. 24. : 적격자선정심의회위원회 개최
- 라. 2022. 12. 8. : 위·수탁 협약 체결

5. 관계법령

-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관 계 법 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수탁자 선정방식
 6.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관리 및 운영)

-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